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91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의자 : 김현권 · 김철민 · 황주홍
오영훈 · 손금주 · 윤준호
이양수 · 손혜원 · 경대수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협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제1항 등).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감안하여야”를 “고려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착수하지”를 “시작하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함에 있어서”를 “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할 때”로 한다.

제27조 중 “별칙의 적용에서는”을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 18. (생 략)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2. ~ 18. (현행과 같음)

19. -----

<p>따른 사업의 <u>착수·변경</u>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p> <p>20. ~ 24. (생 략)</p> <p>② (생 략)</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u>함에</u> <u>있어서</u>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27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 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u>별 칙의 적용에서는</u> 공무원으로 본다.</p>	<p>-----<u>시작</u>-----</p> <p>-----</p> <p>20. ~ 2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u>할</u> <u>때</u>-----</p> <p>-----</p> <p>-----</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p> <p>-----</p> <p>-----<u>별</u> <u>칙을 적용할 때에는</u>-----</p> <p>-----.</p>
---	---